

01. 대평오신 민운강 수조영보 위임민

홍선대원군의 개혁 정치(1863~1873)

- 왕권 강화 : 비변사 폐지 → 의정부, 삼군부 부활
- 법전 편찬 : 『대전회통』, 『육전조례』
- 민생 안정
 - 전정 : 양전(은결 설탁)
 - 군정 : 호포제 실시
 - 환곡 : 사창제 실시
- 서원 철폐(경리)

• 조선의 세급 가운데 군포라는 것이 있는데, 천하의 세급 중에 이보다 더 악독한 것은 없다. …… 지난날에도 개혁이 있었으나 결행하지 못했으며, 대원군이 의연히 단행하여 군포를 혁파하고 호포(戶布)를 징수하여 국세를 크게 부담하게 하니 백인 폐단이 한꺼번에 정리되었다.

• 대원군이 …… 각 도에 명령하여 서원 가운데 특수한 서원 약간만을 남겨 두고 전부 철폐하며, 서원에서 기거하던 유생은 귀가하여 수업하게 하고 위반자는 처형하여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이로써 지방 유림은 그 근거지를 잃고 대원군을 동방의 진사왕이라 비방하였지만, 백성들은 그 결단을 칭송하였다. - 박은식, 『한국통사』 -

- 경복궁 중건 : 원납전 징수, 당백전 발행, 양반 묘지림 벌목

경복궁은 조선 왕조 중엽에 여러 차례 화재를 당했으나 임진왜란 때 소각된 이후 중건하지 못하여 주춧돌만 남아 있었다. …… 경복궁 중건을 시작할 때 재정이 궁색하여 일에 집중하지 못하자, 필도의 부호들에게 금전을 부과하여 가두어들이자 파산자가 속출하였다. 그때 정부에서는 이를 원납전(願納錢)이라고 하였지만, 백성들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원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납부하는 원납(怨納)이다.”라고 하였다. - 『매천야록』 -

방인박해(1866, 2월)

- 천주교도, 프랑스 신부 처형

개구벌 서건호 사건(1866, 7월)

- 평양, 박규수

방인양요(1866,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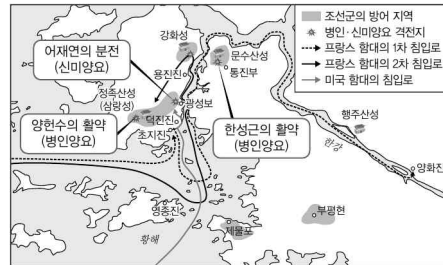
- 프랑스 로즈 제독, 강화도 침략
- 정족산성(양현수), 문수산성(한성근)
- 외규장각 도서 약탈

오베르트 도굴 사건(1868)

- 독일 상인, 남포면도 굴미수

신미양요(1871)

- 미국,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통상 요구
- 로저스 제독, 강화도 침략
- 광성보(아제연)



학병이 건립(1871~)

- 洋夷侵犯 非難(非難) 和主(和主) 國(國) (양이침범 비잔축화 주회미국)
- 戒我萬年子孫 丙寅(丙寅) 辛未(辛未) 立(立) (계이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일본 내 강한문 대두(1868~1870)

- 서계(書契) 문제

민씨 잡전

- 고종 친정 선언(1873)
- 통상 개화 정책 추진

윤요호 사건(1875)

- 일본 군함, 함포 외교
- 강화도의 초지진 공격, 영종도 상륙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1876)

- 자주국, 부산 외 2개 항구 개방, 해안측량권, 영사재판권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1876년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일본 정부가 조약을 체결한 실용적인 목적은 …… 조선 거주 일본인들의 보호와 무역 특혜의 획득이었다. 이 조약의 영향으로 …… 재물포, 부산, 원산 등 3개 항이 일본에 개방되었고, 일본인들이 조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게 되었다. - 『서양인 교사 팔리온 길모어, 서울을 건다 1894』 -

부속 조약

- 조일 수호 조규 부속 : 일본 화폐 사용, 거류지 설정
- 조일 무역 규칙 : 양곡의 무제한 수출 가능, 관세(無), 항세(無)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 『조선책략』 유포(방러) →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 러시아가 아시아의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당장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지장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다. - 『수신사필기』 -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

- 최혜국 대우, 거주조정, 영사재판권

제4관 조선과 미국 국민들은 각각 영원히 화평하고 우에 있게 지낸다. 만약 제3국으로부터 불공평하거나 압신여감을 당하면,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 준다.

제5관 조선의 상인과 상선이 미국에 가서 무역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미국의 해관 장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징수한다.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모두 세금을 비차야 하며, 그 수세권(收稅權)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가진다.

제14관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 『고종실록』 -

조일 통상 강령(1883)

- 항세(有), 관세(有), 방곡 규정(→ 방곡령 실시)
- 최혜국 대우

제9관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세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 세칙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문과 흥수, 전정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잠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신사 : 일본, 1876-1880-1882

조사사찰단 : 일본, 비밀리에 파견, 1881

영선사 : 청, 무기 제조 기술 습득(렌진 기구), 1881 → 기구장 설치(1883)

보빙사 : 조선 주재 미국 공사 파견에 답례, 민영익·유길준 등, 1883

개화 정책

- 통리기무아문(1880)
- 별기군(1881), 기기창·박문국·전환국(1883), 우정총국(1884)

위경척사 운동

- 1860년대 통상 반대, 척화주론론, 이항로·기정진
- 1870년대 개항 반대, 왜양갈체론, 최익현
- 1880년대 『조선책략』 유포 반대, 영남 민인소(1881), 이만손·홍재학
- 1890년대 을사미약, 을미개혁(단발령) → 을미의병(유인석·이소응)

• 서양 오랑캐의 화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흉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힘쓰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략(狎弊)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도록 하소서. - 이항로, 『화서집』 -

• 왜인들이 의적임을 어찌 아는가 하면, 그들은 양척의 일집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몇 해 전 중국에서 보내온 글에 “프랑스, 미국 두 나라가 왜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 최익현, 『면담집』 -

•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아무런 감정도 없습디다. 공연히 남이 이간질하는 말을 믿었다가 우리 체통이 손상되는 바가 있겠나이다. …… 하물며 러시아, 미국, 일본은 모두 같은 오랑캐이니, 누가 더하고 덜하다는 차이를 두기 어렵습니다. - 영남 유생 이만손 등 민인소, 『일성록』 -

임오군란(1882)

- 구식 군인 차별, 민중 생활 악화

군란이 떨어진 지 13개월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리들은 서리사육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병졸과 백성들의 어려움은 인종에도 없었다. …… 광흥창의 쌀을 깨내 1개월분의 군량을 지급하였는데, 민검호의 심복이 언덕 창고지가 모래가 섞인 쌀을 지급하면서도 양을 적게 주는 등 농간이 심했다. 군졸들이 몹시 흥분하여 민검호를 찾아가 호소했으나 오히려 실책을 당했으므로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 빈란군 일부는 민씨 일가를 습격하여 여러 사람이 죽거나 난을 피해 도망갔다. - 『한국통사』 -

- 경복궁 습격, 명성황후 피신(충주) → 흥선대원군 재집권

- 창군 개입 → 흥선대원군 압송(렌진)

- 청의 내정 간섭 강화

- 고문 파견(아간상, 월렌도르프)

- 제물포 조약 : 조 ~ 일,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 배상금

- 조정상민수륙무역장정 : 속방 규정, 치외법권, 청 상인의 내륙 진출 허용

- 개화파 분화

- 온건개화파 : 친청, 동도서기의 개화, 김홍집·이윤중·김윤식 등

- 급진개화파 : 친일, 서도서기의 개화, 김옥균·박영효·서경범 등

민씨 재집권

- 친청 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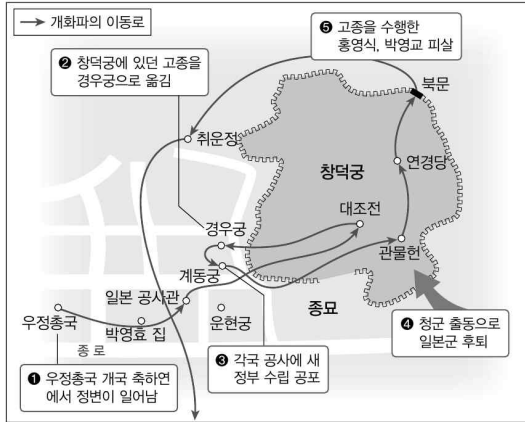
02. 갑한텐 개방등칭 갑

갑신정변(1884. 10.17.~10.19.)

- 급진개화파의 불만, 일본 차관 도입 실패, 청프 전쟁 발발
- 일본 공사의 군사적 지원 약속
- 우정청국 개국 축하연
- 개화당 정부 수립 → 14개조 개혁 정당 발표

- 흥선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할 것, 청에 대한 조공 허락은 논의하여 폐지할 것
 -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 국내 재정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그 외의 모든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 의정부와 6조 이외에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혁파하고, 대신과 참찬이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할 것
- 김옥균, 『갑신일록』 -

- 3일 천하 → 청의 내정 간섭 심화



한성 조약(1884)

-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 지불 및 공산관 신축 비용을 부담할 것 등 규정

멘진 조약(1885)

- 조선에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향후 조선에 파병 시 상대국에 미리 알리도록 규정

거문도 사건(1885~1887)

- 영국 불법 점령(러시아 견제) → 조선 중립화론 대두(부들러, 유길준)

지금 우리나라의 지리는 아시아의 목에 처해 있어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것은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 불가리아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이 서로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를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실로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이 될 수 있다. ……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먼저 제정할 수 없으니 그것은 중국에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유길준 전서』 4 정치·경제편, 외교론, 중립론 -

방곡령(1889~1890)

- 지방관(함경도, 황해도)의 선포

교조 신원 운동(1893)

- 교조 최제우(1824~1864)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 삼례 집회·보은 집회

동학 농민 운동(1894)

- 고부 농민 봉기
- 고부 군수 조병갑의 폭정(민선보 사건), 사발동문, 전봉준
- 제1차 봉기(백산 집결)
- 안핵사(이용태)의 탄압, 4대 강령과 격문 발표, 보국안민제복구민의 구호
- 황토현·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 → 전주성 점령(4월)
- 청에 군사 요청
- 청군 개입(아산탄) → 일본군 상륙(연진 조약 위반 구실, 제물포)
- 전주 화약 : **집강소 설치**, 폐정 개혁 약속(→ 교정청)
- 일본의 경복궁 습격
- **청일 전쟁 발발**
- 갑오개혁 강요 → 군국기무처 설치
- 제2차 봉기(삼례 재봉기)
- 북접 + 남접, 난산 집결
- **공주 우금치 전투 패배**
- 반봉건반침략, 항일 의병 참여, 갑오개혁에 일부 요구 반영

재판관 : 작년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모았다 하니, 어떤 사연으로 그리 하였는가?
 전봉준 : 그때 고부 군수가 정해진 액수 외의 가렴주구가 몇만 냥 되기에 민심이 억울하여 그리하였다.
 재판관 : 흠어진 후에는 무슨 일 때문에 다시 봉기하였는가?
 전봉준 : 그 후 이용태가 안핵사로서 우리 고을에 와서 봉기한 백성을 동학이라 몰아 체포하여, 다시 일어났다.
 재판관 : 전주 화약 이후 다시 일어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봉준 : 일본이 개화라 칭하며 군사를 이끌고 우리 도성에 들어가 왕궁(경복궁)을 습격해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해 일본과 전투하기 위함이었다.



갑오개혁-유미개혁

- 제1차 : **군국기무처**, 김홍집 내각, 궁내부 설치, 공사 노비제 폐지, 과부 재가 허용
- 제2차 : 청일 전쟁에서 승리, 흥법 14조, 근대적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 조서 반포
 - 소학교·사범학교·외국어 학교 관제(한성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한성 외국어 학교 설치)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고하게 세운다.
 3. 대군주(임금)는 ……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되, 종실과 외척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7. 조세의 과세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10. 지방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4.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구함에 있어서 조정과 민간에 두루 걸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 『고종실록』 -

짐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세우고 정통을 물려준 것이 이제 500여 년이 지났으니, 실로 우리 선왕들의 교화와 은덕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또 우리 신하와 백성들이 충성과 사랑을 능히 다했기 때문이다. ……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고 독립한 여러 나라는 모두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밝게 열려 있다. 지식이 많은 것은 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 짐이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 신하와 백성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 『관보』(1886. 2. 2.) -

- 제3차(유미개혁) : 건양 연호 제정, 태양력 사용, **단발령 공포**, 종주법 확대 시행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형제 가 바야흐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 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 무릇 머리를 깎는 자는 뺨뺨 깎지 아니하고 상투만 자르고 머리털은 남겨 놓아 장발승 같았다. 오직 부인네와 어린이들만 깎이지 않았다. 학부대신 이도재는 연호의 개정과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 황현, 『매천야록』 -

03. 사삼을아 득대라의 1 2 특장기한 없다

시모노세키 조약(1895, 4월)

- 청일 전쟁에서 일본 승리, 랴오둥반도 차지

삼국간섭(1895, 5월)

- 러시아, 프랑스, 독일
- 일본의 랴오둥반도 반환

을미사변(1895, 8월)

- 친러 내각 수립 → 명성황후 시해 → 김홍집 내각 수립 및 개혁 추진

나는 결코 민비(명성 황후)의 집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민비의 음모와 사악한 간신배들을 응징하기 위해 폐위도 주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암살자가 우리의 왕후를 잔혹하게 시해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윤치호, 「윤치호 일기」 -

이권파천(1896, 2월)

- 고종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 을미개혁 중단,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 가속화

러일전쟁(1904~1905)

- 전쟁 직전 대한제국의 국외중립 선언
- 일본의 러시아 기습 공격

한일 의정서(1904, 2월)

- 한반도 내 군사적 요충지 사용
-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약속

제1차 한일 협약(1904, 8월)

- 외교 고문(스티븐스), 재정 고문(메가타)
-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 간섭(고문 정치)

독립협회(1896~1898)

- 서재필 주도, 독립신문 발행(4월) → 독립협회 창립(7월)
- 독립 의식 고취(독립문·독립관), 자주 국권(이권 수호), 자유 만민, 자강 개혁(입헌군주제 추구)
- 만민공동회[러시아의 이권 침탈 규탄] → 관민공동회[현의 6조, 의회 설립 운동과 중추원 관계]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국민이 협력하여 전체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 정부가 외국인과 체결하는 모든 조약은 정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장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는 공개 재판을 시행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고종실록」 -

- 보수 세력의 공화정 모함, 황국협회의 습격 → 강제 해산

대한제국(1897)

- 경운궁 환궁, '광무' 연호, 환구단(원구단)에서 즉위식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대한이라고 하였다. 올미년 이후 정부에서는 고종의 마음을 헤아려 황제로 즉위하기를 권하고 있었다. …… “오늘 대황제의 위호로 높이는 것은, 옛날의 것을 범으로 삼아 오늘의 감각을 맞추는 것이니 그 시기를 고려해도 타당하고, 예의를 근거로 해도 타당합니다.” …… 김영수가 이 사설을 환구단에 고하기 위하여 환구단 옆에다 의식을 치를 제단을 마련하였다. 고종은 황제로 즉위한 후 중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고, 궁으로 돌아와 관리들의 축하를 받았다. - 「매천아록」 -

- 광무개혁(구본산삼, 양전 → **지계 발급**, 1898-1904), 대한민국 국제 반포(전제군주제, 1899)

한국 지배에 대한 서구 열강의 승인

-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월) :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 인정
- 제2차 영일 동맹(1905, 8월) :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 인정
- 포츠머스 조약(1905, 9월) : 러일전쟁 종결

제1조 필리핀은 미합중국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하며, 일본은 필리핀을 침공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
제3조 한국은 러일 전쟁의 원인이므로 전쟁의 결과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 대외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일본이 가지는 것이 현 전쟁의 논리적 결과이다. -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

제3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일본국이 이를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 제2차 영일 동맹(1905, 8.) -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하는 데 이를 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 포츠머스 조약(1905, 9.) -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1905, 11월)

- 통감부 설치, 초대 통감(이토 히로부미), 외교권 박탈
- 고종의 조약 무효 선언(대한 매일 신보에 친서 보도)
-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황성신문)

※ 독립 협회가 주관한 토론회 주제

1897. 8.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에 있다.
1897. 12.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제일로 중요하다.
1898. 1.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광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1898. 3.	우리 국토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1898. 4.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긴급하다.
1898. 5.	백성의 권리가 튼튼할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의 힘을 떨칠 수 있다.

칙령 제2호 지계이문 직원 및 업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계이문은 한성부와 13도 각 부·군의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지계(소유권 증서)를 정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다.
제10조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되는 것은 대한 제국 인민 외에는 불가하다.

- 「관보」(1901. 11. 11.) -



◀ 지계

해이그 루시(1907)

- 이준·이위종·이상설, 네덜란드 만국 평화 회의, 을사늑약 무효 주장

경미7조약(한일 신협약, 1907)

- 고종 강제 퇴위
- 행정 각부에 일본인 차관 임명
- 비밀 각서(부수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국사가 많이 어려운 때를 만났으므로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해서 이용후생의 일에 응용함이 오늘의 급선무이다. …… 짐은 이제 명하여 황실을 호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 두고 그 밖에는 임시 해산한다. …… 군졸들은 짐의 뜻을 잘 받아야 각기 자기 업무에 나아가 허물이 없도록 피하라. - 「순종실록」 -

기류각서(1909)

- 사법권, 감옥 사무권 강탈

한일협정(경술국치, 1910)

- 국권 강탈(데라우치 ~ 이완용)
- 조선 총독부 설치(남산), 총독 정치(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제1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